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2-35
----------	-------

발의연월일 : 2012. 5. 18.

발 의 자 : 서종수위원 외 1인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的人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부터 6개월로 한다.
- 다.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 2012년 4월 30일까지 마포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이래 다른

-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마포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었음
- 이에 하반기에도 사전·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건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7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7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09. 2. 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36호, 2009. 2. 5, 일부개정]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09.2.5)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3.22)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1. 8] [서울특별시마포규칙 제486호, 2007.11. 8, 일부개정]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